

2026년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공고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전 IP 진단과 명세서 검증, 맞춤형 권리화 전략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확보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돕는 「2026년 G-Space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권리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본 연장공고는 기존 모집공고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신청·접수 기간만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6월 01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전 IP 심층 진단과 명세서 교차검증을 지원하고, 기업별 기술·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권리화 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타 지역 지원자 등 상세 신청자격은 동 공고 (2page)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 (선정규모)** 총 15개사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IP 권리화 비용(실비) 지원, 파트너 변리사를 통한 IP 전략 컨설팅 및 명세서 품질 감수 지원 등
- (수행장소)**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 소재* 창업기업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아래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번 항목 참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권리화 수요가 명확한 기업

※ 협약기간 내 출원 완료 및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사업장 소재지 기준 및 타 지역 지원자 자격요건]

- ① 소재지 기준은 **★본점 또는 지점★**에 한함 (*그 외 연구소·공장 등은 신청 불가)
- ②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2026년 8월 1일까지) 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을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타 지역 지원자가 최종 선정 후 상기 조건 미이행 시 선정취소)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업력 및 소재지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주소지(본점 또는 지점)'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및 '주소지(본점 또는 지점)' 기준
- **타 지역 지원자**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2026년 8월 1일까지)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경남 동부권역(양산 또는 김해 또는 밀양)으로 사업자등록(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 내 본점, 지점, 공장, 연구소 등이 함께 있는 경우

☞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음 (*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로 신청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창업아이템)의 동일 유무 관계없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2026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Space@East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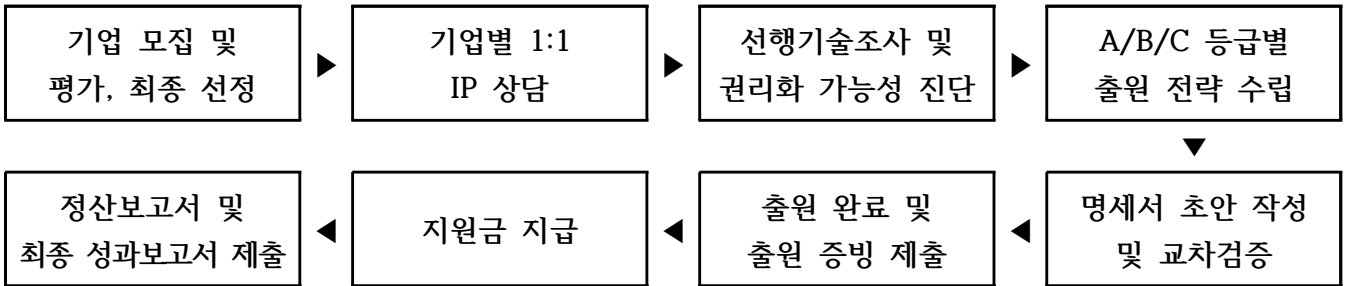
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⑩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가. 지원체계 및 추진 프로세스

- (지원체계) 동부센터 사업 담당자, 파트너 변리사(민간 IP 전문 수행기관), 참여 기업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사업 추진 프로세스 >



나. IP 권리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백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text{총 사업비}] = [\text{IP 권리화 지원금 2백만원}] + [\text{창업자부담금} * (\text{지원금의 10\% 부가세})]$$

* (창업자부담금)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0%) 및 지원금 한도 초과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이를 창업자부담금으로 함

- (지원항목)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限
(출원 관련 “**관납료** 및 **대리인 수입료**”에 한해 사용 가능)
 - ※ 위 지원 항목 외 변리사 성공보수료, 등록료·연차료·갱신료, 우선심사청구료, 출원 후 중간사건 대응비용, 심판·분쟁 대응비용, 해외출원 관련 비용 등은 지급 불가
- (지원방식) 출원 완료 및 관련 증빙 확인 후 지급
 - ※ 협약 기간 내 출원 완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 한도 초과금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
 - ※ 지원금 한도 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바우처 형태 사용 가능
- (제출 증빙서류) 출원서 사본 및 출원번호가 확인되는 서류(특허청 접수통지서, 전자출원 접수증 등)

다. 기업별 IP 진단 및 컨설팅

- 파트너 변리사가 기업별 1:1 상담을 통해 기술, 제품, 서비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권리화 포인트를 진단
-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유사 기술 존재 여부, 차별화 가능성, 적정 권리 유형(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을 분석
- 기업별 권리화 추진 방향, 출원 범위, 보완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파트너 변리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A/B/C 등급 운영 방식

- ▶ (A등급) 현재 사업 아이템 기준으로 권리화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여 즉시 출원 가능
- ▶ (B등급)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청구범위, 구성요소, 설명 방식 등을 조정하면 출원 가능
- ▶ (C등급) 현재 상태에서 차별성이 다소 약하거나 표현 보완이 필요하나, 권리 유형 조정·청구범위 축소·표현 보완·출원 전략수정 등을 통해 출원 진행

라. 명세서 초안 교차검증 지원

- 창업기업은 출원 대리인(변리사)을 자율 선택할 수 있으나, 센터가 제공하는 파트너 변리사의 명세서 교차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함
- 파트너 변리사는 명세서 초안, 상표·디자인 출원 서안 등을 검토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회피 설계 및 권리 범위 조정 방향을 제안함 → 교차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출원 완료 유도

마.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콘 프로젝트(CORN-Project)* 1~2단계 과정 진행

*(콘 프로젝트) 고객지향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워크숍(실습) 형태, 단계별 1일 8시간 과정

바.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 우수 졸업기업 대상 후속 투자 연계 및 TIPS 프로그램 진입 지원
-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타 지원사업 정보 공유 및 추천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026. 6. 1.(월) ~ 6. 15.(월), 18: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접수는 마감일(6월 15일) 18:00 정각에 종료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접수 불가)
- ②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추가·삭제 불가**
- ③ 신청·접수 마감 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④ **기존 신청기업은 별도 재신청 없이 기 제출한 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봄**
- ⑤ **기존 신청기업은 연장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변경·보완이 가능함**

□ **(신청방법)** 경남창업포털(<https://www.gnstartup.kr>) 회원가입 후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경남창업포털 신청 기능 사용설명서"** 참조

□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협약서 1부 ([붙임 2] 양식)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양식)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양식)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양 식	제출방법	제출처
① 참여기업 신청서	붙임 1	양식목록 내 한글(hwp) 파일로 제출	경남창업포털 (https://www.gnstartup.kr)
② 협약서	붙임 2		
③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④ 사업계획서	붙임 4		
⑤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양식목록 내 한글문서로 붙임 제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1.5배수 이내 선정)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15분 이내)	선정 확정 및 OT 협약체결
'26. 6. 16.	'26. 6. 17.	'26. 6. 23. (서류평가통과자)	'26. 7. 1.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는 주관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가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③ **(발표평가)** 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진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시간 : 기업별 15분 이내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단, 비상 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 ④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문제인식 및 권리화 필요성, 기술성·차별성, 사업성 및 활용 전략, 지식재산권 추진 적정성, 대표자 및 조직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 점
문제 인식 및 권리화 필요성 (20)	문제 인식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시장 니즈의 명확성	10
	권리화 필요성	권리화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10
기술성 및 차별성 (30)	기술성	기술·아이템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10
	차별성	기존 유사 기술·서비스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10
	경쟁우위	권리 확보 시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	10
사업성 및 활용 전략 (20)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 가능성	10
	활용 전략	권리 취득 후 활용 계획 및 사업화 연계 전략의 구체성	10
지식재산권 추진 적정성 (20)	출원 전략	출원 유형 선택의 적정성 및 권리화 방향의 타당성	10
	수행 가능성	협약 기간 내 출원 완료 가능성 및 추진 일정의 현실성	10
대표자 및 조직역량 (10)	추진 역량	대표자의 전문성, 추진 의지 및 내·외부 협력 역량	10
총 점			100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 진행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 및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고,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 중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으로 이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사업 수행 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선정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7

사업 신청 문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G-Space@East)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55-386-3042
 - (E-mail) ✉ hyeonk3419@ccei.kr